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작성요령 포함)

2015. 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I.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5호(2014.05.23.))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당해 용역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한 기준(아래 II 항, III 항)으로서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동 작성 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 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우리 사무소에서 금회 공고한 2개 용역사업은 1개업체가 공고한 모든 용역에 입찰참가는 가능하나, 1건의 용역에만 최종낙찰자로 참여할 수 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최우선 순위 낙찰자가 될 경우 1건 외 나머지의 용역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신청된 용역은 다음 최우선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에 참가자격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입찰참가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별’으로 한다)」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1)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시특별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 · 분야책임 · 분야참여)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2) 정밀점검의 경우 시특별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한한다.

나.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 PQ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 하되,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한다.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0점)에 미달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입찰에 참가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통지하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76호, 2013.5.2.)에 따른다.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 2째자리로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회사에 대한 각 항목 평가시 각각 참여사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사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사의 지분률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4.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II.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용어의 정리

-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구, 정부투자기관을 포함, 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 시설물 : 시특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중 1. 교량 및 2. 터널에 포함된 시설물 중 도로시설물을 시설물로 본다.
- 기타시설물 : 시특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중 1. 교량 및 2. 터널에 포함된 도로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과 도로의 1·2종 외 도로시설물(교량 및 터널)을 기타시설물로 본다.
※ 철도교, 철도터널, 별표 1 분류 중 3. 항만 내지 8. 옹벽 및 절토사면의 시설물(1·2종 시설물일 경우 인정 : 증명자료 첨부)
- 도로 :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 시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말한다.(다만, 1999년 1월 시특법 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점검으로 인정하며, 내하력평가, 수중조사, 성능개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자격 또는 등급

- 사업참여기술자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필수 교육 이수자	비고
정밀안전진단	특급기술자	참여기술자 전부	
정밀점검	특급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및 참여기술자(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구 분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비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특 급	고급이상	

- 참여기술자의 자격점수가 “0”점인 경우 해당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점수는 불인정한다.

다. 경 력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특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도로 및 공항분야(교량 및 터널에 한함)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경력증명서 상 기술자 직무분야 등급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경력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평가하고 용역실적 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0일로 개월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에 대하여는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및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발주청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수행 · 용역 감독 · 관리자 경력 : 100%
 -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수행 · 용역감독 · 관리자 경력 : 80%

라.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도로시설분야(교량 및 터널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초기점검	
분야별참여기술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초기점검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소속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도로 및 공항분야(교량 및 터널에 한함) 정밀안전진단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및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발주청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대상용역 수행·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100%
 -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의 대상용역 수행·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8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이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금액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 100%
- 기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 80%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예시)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공동도급(50:50)으로 5천만원 정밀점검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실적지분은 2천5백만원으로 용역수행건수 0건, 용역수행금액 0원으로 평가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점검진단 실적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업체에서 발주한 용역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하도급 포함)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신 용 도

가.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보완’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건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60이상	60미만 45이상	45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15미만 0.5이상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 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과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정부에서 인가한 건설기술 관련협회 등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III.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합계		100					
가. 참여기술자			45					
	사업책임기술자		18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해당 특급기술자 이상				
사업책임	등급	-	-	등급 :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경력	도로분야 안전진단	8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8	7.2	6.4	5.6
		실적	준공건수	5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5	4.5	4	3.5
	준공금액	7억원이상		5	7억미만 ~6억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	4.5	4	3.5
		11건이상		5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	4.5	4	3.5
		5억원이상		5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	4.5	4	3.5
분야별 책임기술자			18	등급 : 토목 직무분야 해당 등급 기술자				
분야별 책임	등급	-	2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1.4		
		경력	도로분야 안전진단	6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6	5.4	4.8	4.2
		실적	준공건수	5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	4.5	4	3.5
	준공금액	5억원이상		5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	4.5	4	3.5
분야별 참여기술자			9	등급 : 토목 직무분야 해당 등급 기술자				
분야별 참여	등급	-	2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경력	도로분야 안전진단	3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3	2.7	2.4	2.1
	실적	준공건수	4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	3.6	3.2	2.8
								2.4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긴급(초기) 점검, 정밀점검 기준 건수는 3천만원 이상만 해당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	점대평가 금액	12	10건 이상 12	10건 미만 ~ 8건 이상 10억원 이상 ~8억원 이상 13	8건 미만 ~ 6건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11.7	6건 미만 ~ 4건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10.4	4건 미만 7.2 4억원 미만 7.8
				13	13	9.6	8.4	9.1
			10	10.4	9.1	7.8		
다. 신용도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용역업자	점대평가	4	•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이하 : 0.2점)				
	참여기술자	점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 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 등급	점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A-이상 BBB-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3-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점대평가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1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6점/건당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건설신기술은 활용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 특허 및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3.0%이상 ~2.5%이상	3.0% 미만 ~2.5%이상	2.5% 미만 ~2.0%이상	2.0% 미만 ~1.5%이상	1.5% 미만 0
투자실적	점대평가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7.2	6.4	5.6	4.8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마. 업무중첩도			10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절대평가	6	•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의 잔여기간을 합산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6	6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절대평가	4	•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의 잔여기간을 합산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4	4	3.6	3.2	2.8	2.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15. 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1.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개요

- 공고문 참조

2. 용역 참여 신청서 제출 양식 [제본순서]

용역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신청서 공문 [서식 1]
- 2) 신청서 표지 [서식 2]
- 3) 적격심사 신청서 [서식 3]
-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사본
- 5)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서식 4]
- 6) 참여기술자 총괄 [서식 5]
 - **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 7)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서식 6]
 - **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교육 수료증 첨부
-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7]
-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8]
 - **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서 첨부
-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 결과 [서식 9]
- 11)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현황 [서식 10]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 12) 부실벌점 현황 [서식 11]
- 1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12]
- 14) 기술개발·투자실적 [서식 13]
- 15)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 16)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 17)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 18)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서식 14]
- 19)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산출근거 [서식 15]

※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

3. 기타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4)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5)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인 경우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취소한다.
 - 나.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6)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도록 하여야하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7) 용역참여 신청서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1) 크기 : A4 (210mm×296mm, 종방향)
 - (2) 질 : 백상지(80g/m²)
 - (3) 제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 (4) 제출부수 : 2부 (건별)

제 출 양 식

[서식 1] (신청서 공문 : 예시)

업 체 명

공문번호		년	월	일
수 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참 조	구조물과장			
제 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2. 자기평가서	1부 끝.

업 체 대 표 자 (인)

[서식 2]

국 토 교 통 부
진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관리 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용역명 기재)

2015. 07.

○○ 엔지니어링(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식 3]

적격심사신청서

- ## ○ 용역명 ○ 발주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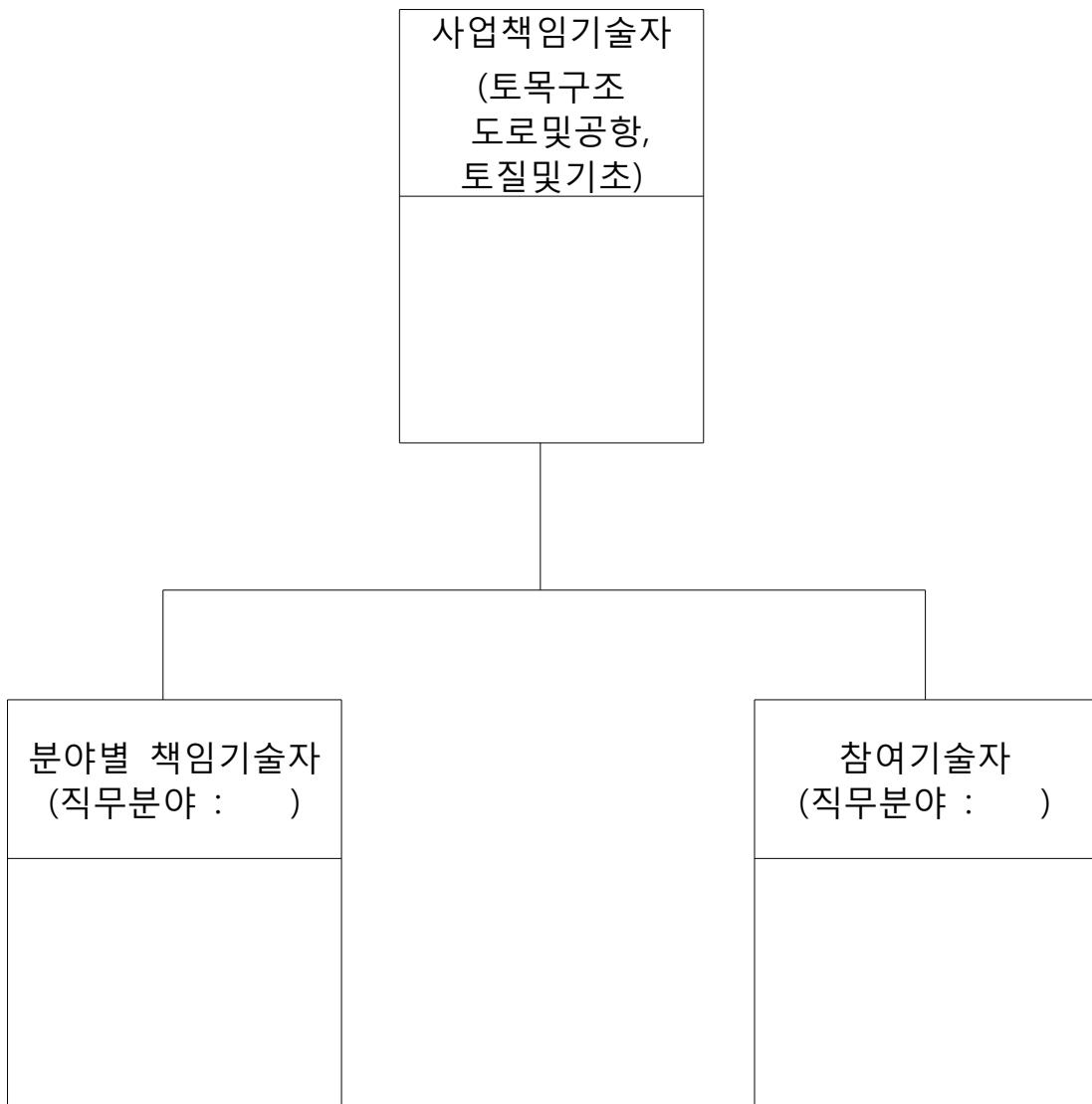
위 건 용역입찰의 PQ심사와 관련하여 PQ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PQ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참여업체 주 소 :
회 사 명 : (TEL.)
대 표 자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서식 5]

참여기술자 총괄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직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자		00. 00. 00 (만00세)				
○ 분야별 책임 기 술 자						
○ 분야별 참여 기 술 자						

[작성요령]

- ※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1, 분야책임1, 분야참여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 ※ 기술자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회 참여분야				
경력	1059일÷365일= 2.9년			실적	건수 금액	건 백만원		
자격정지	개월("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 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00건					1059				1059/365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철도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3	○○○○○ 정밀안전진단	기타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4	국도1호선 0터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11. 01.01	2012. 06.30	365	100%	219	00도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주처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비고
			착수	준공		건수(A)	금액(백만원)(B)			건수(A*C*D)	금액(백만원)(B*C*D)	
	산정결과											
계						4	310			2.04	171.6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00%	1	100	
2	경부선 0교 정밀안전진단	철도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70%	80%	0.56	39.2	
3	0항 정밀안전진단	기타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50%	60%	0.3	18	
4	국가하천 0보 정밀안전진단	기타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30%	60%	0.18	14.4	

4. 요약

구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고		
도로시설물		100		건수				
				금액				
철도시설물		80		건수				
				금액				
기타시설물		60		건수				
				금액				
총계			= 000,000 /365	건수				
			년	금액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자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고
			시작	종료	
			2010. 01.01	2011. 12.31	(주)

[작성요령]

※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도로시설 분야 (도로 및 터널에 한함)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

-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한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의 실적 모두 인정

※ 사업책임기술자 1, 분야별 책임기술자 1,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개인별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하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PQ심사 신청용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설계() 감리()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주처	실적		지분율	적용실적		비고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 금액 (백만원) (B)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4	250		3.1	240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	100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터널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80%	0.8	56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60%	0.6	36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터널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60%	0.8	48	

[작성요령]

-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도로시설 분야(교량 및 터널에 한함)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단일 계약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며, 년도란에 "○년○월○일 ~ ○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
-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 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첨부된 실적만 인정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9]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착수	준공			
건							

[작성요령]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한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하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0]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체명 참여기술자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개월)				
용역 업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여 기술자									
	계								

[작성요령]

-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 기간은 "○년○월○일 ~ ○년○월○일(○일)"로 기재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1]

부실벌점 현황

구분	업체명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용업 역자							
	소계						
참여 기술자							
	소계						

[작성요령]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1. 회사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작성요령]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등급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해당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시 인정한다.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3]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작성요령]

-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양식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
-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하며,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으로 표기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a)	A	B	A/B (b)	A	B	A/B (c)		
										$[(\text{(a}) + \text{(b}) + \text{(c})]/3] \times \text{참여지분율}$	
										$[(\text{(a}) + \text{(b}) + \text{(c})]/3] \times \text{참여지분율}$	
										$[(\text{(a}) + \text{(b}) + \text{(c})]/3] \times \text{참여지분율}$	
계											

[작성요령]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기재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4]

업무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사업 책임 기술자		분야	참여 기간	증복 기간	증복 일수			
		계	건					
분야별 책임 기술자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작성요령]

- ※ 참여기간은 당해연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경상남도(18개 시·군 포함),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참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 모두 기재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00%)/○○○○○○○(00%)

1. 항목별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평 가 법	배점	점수	산 출 근 거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절대평가	-		· 자격(유,무) :
		경력		8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야별책임기술자	자격	절대평가	2		· 자격 :
		경력		6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야별참여기술자	자격	절대평가	2		· 자격 :
		경력		3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 건수 : 건
유사용역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12		· 건수 : 건
		실적금액		13		· 금액 : 천원
신용도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평가	4		· 보완 : 건 · 부실 : 건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지정기간		3		· 업체 지정기간 : 월 · 참여건설기술자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평가	2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 투자실적비율 : %
업무중첩도	사업책임기술자		절대평가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자			4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합계				100		
총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비고
			성명	자격		경력	유사용역 실적		
참여기술자	구분	업체명	성명	자격	경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 책임 기술자	구조 or 도로및 공항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자	구조			년 월	건	천원		
		도로및 공항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자	구조			년 월	건	천원		
		도로및 공항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보완 : 부실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 책임 기술자 (구조 or 도로및 공항)							
		분야 책임 기술자	구조						
		분야 참여 기술자	구조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신 기술		건					
		특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특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기술자 업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자			개월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작성요령]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바람.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 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